

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24.

발 의 자 : 윤한홍·김성찬·이주영  
김종석·강석진·성일종  
홍철호·황주홍·강효상  
원유철·엄용수·이종구  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 등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.

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, 재산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어, 유능한 인재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으며, 국가적으로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.

또한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, 과도한 신상털기에 치우쳐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

을 낳고 있음.

이에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,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, 필요시 회의를 공개하거나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, 별도의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을 위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,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(안 제4조의2 신설).
- 나.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, 인사청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경우 「국회법」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

(의안번호 제579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등) 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(이하 “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”라 한다)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(이하 “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”라 한다)로 분리하여 실시한다.

②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학위취득·병역·재산형성·납세 및 범죄경력 등 윤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,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는 학력·경력 및 전문성 등 업무능력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다.

③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에서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중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공

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고,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내용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징계) 인사청문을 하는 의원이 제18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「국회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의2(인사청문회 <u>분리</u> 실시 등) 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(이하 “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”라 한다)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(이하 “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”라 한다)로 분리하여 실시한다.</p> <p>②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학위취득·병역·재산형성·납세 및 범죄경력 등 윤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,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는 학력·경력 및 전문성 등 업무능력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다.</p> <p>③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에서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</p>

<p>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능력검증인사청문회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중 <u>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</u>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고, <u>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</u> 내용에 대하여 <u>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8조의2(징계) 인사청문을 하는 <u>의원이 제18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「국회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u></p>
--	---